



의안번호	제 2015 - 35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12. 9. (제69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5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 ·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유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 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 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양형인자의 정의]

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

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